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시험업무 안내

〈방재시험소 · 인증업무실 제공〉

1. 개요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이하 '선용품등'이라 한다)은 「선박안전법(법률 제 3907호, 1986. 12. 31)」 및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 승인 등에 관한 규칙(교통부령 제864호, 1987. 9. 18)」에 따라 항만청의 형식승인을 받아 선박용으로 제조, 판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소(Fire Insurers Laboratories of Korea; 약칭 FILK)는 해운항만청으로 부터 스프링클러 헤드등 방재 관련분야의 선용품 18개 품목에 대한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는 국내 손해보험업자들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16여년에 걸친 방재분야의 경험을 토대로 설립된 방재시험소가 전문방재기술을 갖춘 기술인력과 각종 관련 첨단시험설비를 확보하고 있는 등 국내 유일의 방화관련분야의 시험연구기관이기 때문이다.

선용품등은 육상의 건물용과는 달리 해상의 선박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특히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선용품등의 형식승인시험업

무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동 업무는 제조자가 품질이 우수하고 균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재해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극소화하여 손실경감에 기여하는 것이 근본 목적인 것이다.

2. 시험기관 지정

해운항만청은 선박안전법 제6조 제3항과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방재시험소를 선용품등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관으로 지정하였다.

1988년 3월 8일 스프링클러 헤드등 10개 품목에 대해 해운항만청 검측 33760-1445(지정서 제88-2호)로 1차 지정한 후 1989년 5월 17일 소화펌프등 8개 품목에 대해 해운항만청 검측 33760-2734(지정서 제89-5호)로 추가 지정해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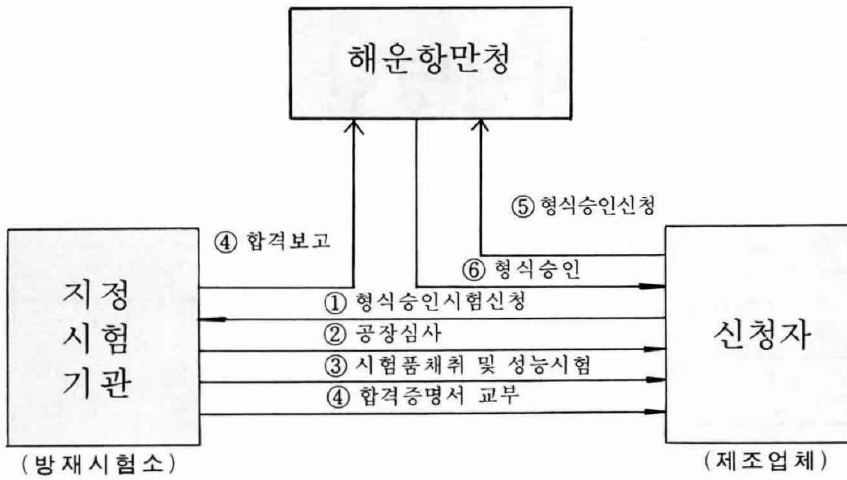
3. 형식승인 시험품목

선용품등의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서 방재시험소가 지정을 받은 시험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스프링클러 헤드
(Sprinkler Heads)

- (2) 자동확산형소화기
(Automatic Fire Extinguishers)
- (3) 포말소화기
(Foam Fire Extinguishers)
- (4) 분말소화기
(Dry Chemical Fire Extinguishers)
- (5) 탄산가스소화기
(Carbon Dioxide Fire Extinguishers)
- (6) 포말소화약제
(Foam Fire Extinguishing Agents)
- (7) 분말소화약제
(Dry Chemical Fire Extinguishing Agents)
- (8) 화재탐지기(감지기)
(Fire Detectors)
- (9) 방화문(Fire Doors)
- (10) 격벽 또는 갑판에 사용하는 방화용 제품(Fire Resistant Construction, Assemblies and Materials for Bulkheads or Decks)
- (11) 소화펌프(Fire Pump)
- (12) 소화호스(Fire Hose)
- (13) 노즐(Nozzle)
- (14) 수분무장기
(Water-Spraying System)
- (15) 국제육상시설연결구
(International Shore Connection)
- (16) 방연마스크(Smoke Mask)
- (17) 자장식호흡기
(Self-Breathing Apparatus)
- (18) 방연헬멧(Smoke Helmet)

업무흐름도



4. 형식승인시험절차

(1) 신청서류 접수

선용품등의 형식승인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지정 시험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① 형식승인시험 신청서
- ② 시험품의 제조사양서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
- ③ 시험품의 성능, 도면, 구조, 형상 및 재료와 그 사용법에 관한 설명서
- ④ 기타 선용품등의 형식승인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공장심사

성능시험을 하기 전에 지정시험기관은 제조자가 신청한 선용품 등을 계속하여 품질을 균일하게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설비, 제조법, 품질관리, 검사조직 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실시한다.

공장심사는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원이 제조사업장에 입회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 ①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현

황과 제조능력

- ② 각종 사내규격, 작업표준 및 품질관리의 확립과 그 실시현황

③ 형식승인시험을 받고자 하는 제품의 제조현황

- 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장심사는 가능한 한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기간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의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자는 제조자와 협의하여 공장심사에 필요한 자료등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성능시험

성능시험은 신청서류가 적합하고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 해운항만청장이 정한 성능시험기준(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검사기준 및 검정기준)에 따라 시험원이 실시한다.

성능시험기준별 시험품목은 다음과 같다.

- ① 해운항만청 고시 84-2(84. 1. 5)

스프링클러헤드, 자동화산형소화기, 포말소화기, 분말소화기, 탄산

가스소화기, 포말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 방연마스크, 방연헬멧, 자장식 호흡구

- ② 해운항만청 고시 88-46(88. 11. 22)

자동화산소화기(분말), 화재감지기

- ③ 해운항만청 고시 88-52(88. 12. 30)

소화펌프, 소화호스, 노즐, 수분무장치, 국제육상시설연결구, 방화문, 격벽재(격벽, 갑판 및 천정), 갑판상장재, 전선관통판재, 방화용창, 방화용샷터(자동, 수동), 불연성 재료, 상장재, 화장재 및 방화용도료.

성능시험을 위한 공시품은 가능한 한 공장심사시 시험원이 입회하여 채취하며 시험장소는 원칙적으로 지정시험기관에서 실시한다.

(4) 형식승인

형식승인 신청제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하고 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 합격증명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해운항만청장에게는 성능시험성적서와 성능시험 합격증명서를 첨부하여 합격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선용품등의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형식승인신청서에

- ①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 ② 선용품등의 성능, 구조, 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 ③ 제조 및 검사설비 개요서
- ④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을 정한 서류등을 첨부하여 해운항만청

장에게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형식승인서를 교부하게 되는데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다.㉞